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01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한민수·강준현·박균택
문진석·송옥주·서삼석
이연희·김성범·허영
박상혁·이해식·임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확정된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동의의결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1일당 직전 연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미국은 미화 53,088달러(2025년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1일당 부과 한도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

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5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상당한 기한 내에”를 “동의를결 시 정한 이행기한 까지”로, “1일당 200만원 이하의”를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 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u>상당한 기한 내에</u> 동의를 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를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 기 전까지 <u>1일당 200만원 이하</u>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 ----- ---- <u>동의를결 시 정한 이행기</u> <u>한까지</u> ----- ----- ----- <u>이행기간이 지난 날</u> <u>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u> <u>5의 범위에서</u> ----- --. <u>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u> <u>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u> <u>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u> <u>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u> <u>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